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89호

2026. 9. 23.(목)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안 내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 - 939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12.23.)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관사 사용대상자를 정비하고, 관사 운영비의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회 구성 정비(안 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를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 관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정비(안 제49조 및 제50조)
 - 관사의 종류를 폐지하여 통합 운영하고,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관사 사용대상자 규정
- 관사 운영비 부담기준 정비(안 제55조)
 -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

○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정비(안 제56조)

- 사용대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비

○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정비(안 제35조)

-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자로 하고, 소속 정규직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수정

○ 조례 및 시행규칙의 오기 정정 및 법령 현행화 등 정비

-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문구와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고, 법령·조문 인용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

3. 근거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기획재정부훈령 제675호

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4. 개정조례안 및 신규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4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1) 주 소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 회계과)

2) 팩 스: 052-209-3132

3) 전자우편: tlawldms86@korea.kr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전화: 052-209-3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http://www.donggu.ulsan.kr>) 「동구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를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공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공유재산분야”를 “공유재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을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5천만원”을 “5천만 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유재산은”을 “공유재산에 대하여”로,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산소유권상”을 “재산 소유권상”으로, “재산(현황파악)”을 “재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억원”을 각각 “10억 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부채납하게 하는”을 “기부채납을 받는”으로, “하게 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중 “사용허가”를 “무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제7항 전단 중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국가산업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파트형 공장으”를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7조제4항제4호 중 “구창장”을 “구청장”으로, “지원관련”을 “지원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을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으로, “대부 받”을 “대부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을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으로, “대부 받”을 “대부받”으로, “합계))”를 “합계)”로, “연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천만달러”를 “2천만 달러”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구지역”을 “구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를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를 “5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제1호에서”를 “제26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3조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감액조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차 년도”를 “2차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만원을 초과하는”을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인이 사용하는”으로 하며, “정기예금의”를 “정기예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년만기”를 “1년 만기”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만기”를 “1년 만기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만기”를 “1년 만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1년만기”를 각각 “1년 만기”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읍면지역”을 “읍·면지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로 하고, “1만제곱미터”를 “1만 제곱미터”로 한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을 “재해, 붕괴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및 위치 부적정”으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상의”를 “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6호 중 “안정성”을 “안전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한가”를 “적합한지”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가급적”을 “가능한 한”으로 한다.

제49조 중 “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를 “란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 단서 중 “1급·2급 관사의”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관사”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훼손방지”를 각각 “훼손 방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결 유지

제53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대상자의”로 하고, “비치정리한다”를 “작성·관리한다”로 한다.

제54조제4호 중 “운영관리”를 “운영·관리”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재산유지·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사용대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57조 중 “등재 관리”를 “등재·관리”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 중 “시설장비”를 “시설·장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사운영비”를 “관사 운영비”로 한다.

제59조 중 “사용도”를 “사용 도”로, “시설장비”를 “시설·장비”로 한다.

제60조 중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을 “임차한 공용주택”으로 한다.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를 “영 제8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년만기”를 “1년 만기”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율”을 “보상률”로,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백만원”을 “6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거짓서류”를 “거짓 서류”로, “개인명의”를 “개인 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백만원”을 “300만 원”으로, “재산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신고한 사람으”를 “신고자”로, “사람인 경우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거나,”를 “공개하거나”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6조 중 “1년만기”를 “1년 만기”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략)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또는 공유재산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5. (생략)

⑤ ~ ⑦ (생략)

⑧ 심의회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 ③ (생략)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공유재산 분야---

4.·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급할 ---.

제4조(심의회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
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
유재산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
야 한다.

1. ~ 7.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 4. (생략)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
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1. · 2. (현행과 같음)

3. ----- 5천만 원 -----

제7조(실태조사) ① -----
----- 공
유재산에 대하여 -----
-----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

② -----

- 각 호의 -----.

1. ~ 7.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내---

3. · 4. (현행과 같음)

5. ----- 재산 소유권상 -----
-----재산

④ (생 략)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 략)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
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
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생 략)

③ (생 략)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
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
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
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
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
준으로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 ----- 10억 원

나. ----- 10억 원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 기부채
납을 받는 -----

----- 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기간) -----

-----,
무상 사용허가-----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⑥ (생략)

⑦ 영 제 19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
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
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
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
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
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

-. -- 경우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

1. -----

-----국가산

업단지-----

-----국가산
업단지-----

2. _____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 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3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구창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 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 7. (생략)

-----도시첨단 산업단지 -----

3. -----

-----지식산업센터-----

4.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

----- 지원
관련-----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대부받은-----

2. ----- 대부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대부받-----

----- 합계) ----- 연
면적]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

1. -----

-----.

가. (생 략)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 마. (생 략)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사.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바.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바. (생 략)

사. 제26조제1호에서 제3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허가 및 대부) ①·②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2천
만 달러 -----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

----- 구 지역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 1천
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

가. ----- 50
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6조제1호부터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허가 및 대부) ①·② (현행과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돌려준다.

④ (생략)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대
부료가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1
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
분의 10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 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같음)

③ _____

_____ . 다

만 _____

_____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감액조정률

-----.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

----- 2차연도

-----.

② _____

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
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
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
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
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5. (생략)

② 삭제

----- 50만 원을 초과하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사
용하는 -----

- 정기예금-----

③ -----

--- -----1년 만기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년 만기-----

1.~ 5.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에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생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③ -----

-----1년 만기-----

-----.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④ -----

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년 만기 -----

⑤ -----

----- 1년 만기 -----

⑥ -----

--- 1년 만기 -----

⑦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생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4. (생략)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익계약으로 하는

⑦ -----

----- 1년
만기 -----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

3.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 3. (생 략)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구청장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 제

6.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 10. (생략)

② (생략)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

7. -----

- 읍·면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1만 제곱미터 -----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시행-----.

② -----재해, 붕괴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및 위치 부적합-----.

제45조(청사의 부지) -----

-----.

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생략)

② (생략)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

-----에 따른-----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안전성-----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적합한지-----.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가능한
한-----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정의) -----
-----소속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
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
요하지 않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
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생 략)

록 -----
-----.

제50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
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
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 관련
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사용허가)-----

-----.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관사 --
-----.

제52조(사용책임) -----
---소속 직원-----

---.

1. ----- 훼손 방지
2. -----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현행과 같음)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
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
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
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
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
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
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사용대상자-----
----- 작성.
관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 3. (현행과 같음)
4. ----- 운영.
관리-----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현행과 같음)
2. -----
재산 유지·관리비

〈삭제〉

4. -----
---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

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

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

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

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

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

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

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비품대장

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사용대상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

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57조(비품의 관리) -----

- 등재·관리-----.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생략)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시설·장비 -----
2. 관사 운영비 -----
3. (현행과 같음)

제59조(변상조치) -- 사용 도중-----

---시설·장비-----

-----.

제60조(준용) 임차한 공용주택-----

-----.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3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1
년 만기 -----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보상률-----

3천만 원-----.

1. -----
----- 60
0만 원-----
-----.

가. (생 략)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한 사람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거짓 서류-----
-----개인 명
의-----

2. -----

----- 300만 원-----
----- 재산가액-----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신고자

----- 사람에게
는 -----.

④ -----

-- 공개하거나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
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
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
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
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
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만
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
용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줄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
-----.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1년
만기 -----

-.

〈삭 제〉

의견제출서				
시행규칙명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시행규칙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을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기재상항”을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둘수”를 “둘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회계 간의 재산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자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을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를 하고,”로 한다.

제34조 중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을 “사용대상자만”으로,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u>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u>) ① (생략)	제2조(<u>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u>)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 <u>재산관리관</u>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 재산은 <u>총무과장</u>	7. ----- ----- <u>회계과장</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 ③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u>기재사항</u> 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 ----- <u>기재사항</u> ----- ----- -----.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u>둘수</u> 있다.	⑤ ----- ----- ----- <u>둘 수</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u>회계간의 재산이관</u>) 재산관리관이 다른 <u>관리자소관의 재산</u>	제9조(<u>회계 간의 재산이관</u>)----- ----- <u>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u>

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회계 간-----

----- 상호 간--

-----.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를 하고, -

-----.

제34조(청사관리) --- 제44조---

-----.

제35조(관사관리) ①-----

----- 사용대상자

만 ----- 있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
27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8
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